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 신기술·특허명 : 속경성, 내구성 및 방수성을 갖는 콘크리트 단면복구용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단면복구공법
- 발주기관 : 충주시청(043-850-6241)
 - 신기술·특허 적용 공사명 : 삼청1교 보수공사
- 신기술·특허 보유자 : (주)한지건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삼청1교 보수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신기술·특허 보유자(이하 신기술업체)는 위 신기술·특허를 위 공사의 발주기관과 낙찰자가 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법 개요) ① 본 협약에 적용되는 속경성, 내구성 및 방수성을 갖는 콘크리트 단면 복구용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단면 복구공법(공법명 : MRC공법, 특허 제 10-1814960호)을 보유하고 있다.

② 본 공법은 단면보수공법으로 휨강도, 인장강도, 압축강도 등 물리적특성이 우수하고 내구성 및 부착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다.

제3조(협약 대상) ① 본 협약은 충주시 발주 「삼청1교 보수공사」에 적용된다.

② 공사 개요, 시공 범위, 위치 등은 별첨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다.

제4조(역할 및 책임)

- ① 발주기관
 1. 공법 적용에 대한 최종 승인 및 설계변경 검토
 2. 현장 시공관리 및 품질·안전관리
 3. 행정적 협조 및 사업관리
- ② 신기술업체
 1. 공법 기술자료 제공, 기술 자문 수행
 2. 공법 적용 시공 단계별 기술지원 및 장비 사용 안내
 3. 공법과 관련된 품질보증 및 안전기준 제시
 4. 지식재산권·기술권 관련 분쟁 시 책임 부담

제5조(원수급자와의 협약체결) 이 협약에 따라 신기술업체는 위 공사의 낙찰자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사용세부협약을 체결하여 발주자와 낙찰자 간의 계약체결 및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6조(사용범위 및 기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 중 신기술·특허 부분만(기술사용·시공 등)을 사용범위로 한다.

② 제①항에 의한 신기술·특허가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③ 이 협약의 적용기간은 신기술·특허 보호기간까지로 한다.

제7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가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업체는 설계내역서 상의 직접공사비에 0%(제잡비, 부가세 미계상)을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신기술 업체는 제5조에 따라 기술사용세부협약 기술사용료에 대하여 공정률에 따라 분할하여 낙찰자로부터 지급받고, 신기술업체가 보유한 기술력을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신기술·특허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술사용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기술업체는 동 기술과 관련 특허소유에 따른 어떠한 권리비용도 발주자와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단, 신기술·특허 보호기간 이전에 낙찰자와 신기술업체간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되어도 기술사용료는 지급한다.

제8조(하도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가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업체는 “낙찰자”로부터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업체는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설계내역서의 설계금액(제잡비포함)]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신기술업체(통상 실시권자, 전용 실시권 포함)는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한다.

제9조(세부사용협약 체결) ① 제5조에 의거 낙찰자가 신기술·특허공법을 사용하기 위해 신기술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술사용세부협약시 확약하여야 한다.

1. 직접시공의 경우 직접시공 확약
2. 통상실시권 등 제3자가 시공할 경우 당해 시공자의 유사 시공실적 및 신기술업체의 기술지원 확약

② 입찰공고문에 의거하여 해당 신기술·특허 공사 착공전 제출된 세부사용협약서는 제1항

의 각호와 세부공사의 범위, 협약율, 물가변동을 반영 등을 발주자(공사시행부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위 공사의 “낙찰자”와 신기술업체는 이 협약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사용 협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한다.

제10조(설계변경 등) ①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타공법(신기술·특허) 및 일반적인 시공 방법 물품(제품) 등으로 대체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 신기술업체의 귀책으로 기술사용세부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2. 신기술업체가 8조②항을 위반하여 낙찰자에게 과도한 하도계약체결을 요구 할 경우
3. 신기술업체가 9조①항을 위반하여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4. 발주처가 공기간축, 예산절감 등 현장 제반여건의 변동으로 다른 기술, 공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물량변경 포함)
5. 신기술업체가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1조(협약의 해지 및 해제) ①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 협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기술·특허 협약 건에 대하여는 협약의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자의 사업추진과정에서 행정절차(총사업비승인, 공사원가검토 등) 과정으로 인해 설계내역에서 제외되는 경우
4. 제10조①항에 의거 타공법(신기술·특허)이나 일반적인 시공방법(물품)으로 설계 변경이 되는 경우

제12조(품질보증 및 하자책임) ① 신기술업체는 본 공법의 품질 성능을 보증하며, 시공 후 공법 적용 부위에 하자 발생 시 기술적 보완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② 공법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품질 저하 또는 구조 불안정 발생 시 신기술업체가 책임을 진다.

제13조(특약) ① 공사 시행 중 신기술업체(전용 및 통상실시권자 포함) 내부사정으로 부도, 타절, 법적소송 등 공사중지 발생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업체가 통상실시권을 승계한다.

② ①항에 의거하여 공사를 진행할 경우 신기술업체는 8조②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다.

2026년 7월 일

발주기관명(발주자)

충주시장



신기술·특허 보유자

㈜한지건설



첨부 : 1. 신기술지정증서(특허증) 1부.
2. 인감증명서 및 특허사용동의서 1부. 끝.

